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요 오류사항 안내

최근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되거나 사후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추징 등 수출입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적용건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원산지증명서 번호 기입 오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최근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관 지연 및 사후 추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오류 사항

1. 제3국 송장여부 신고 누락

- 대상협정: 한-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 FTA
- 주요 오류내용
 - 원산지증명서(C/O) 상 제3국 송장 관련 항목 누락된 경우
 - 원산지증명서(C/O) 상 제3국 송장 관련 항목이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한 경우
 - 제3국 송장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기재

2.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

- 대상협정: 한-중국 FTA
- 주요 오류내용
 - 중국의 원산지증명서(C/O)는 해관총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원산지증명서 번호 체계가 상이
 -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부적절한 번호 입력

발급기관 구분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증명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해관(CUSTOMS)	K+연도(2자리)+일련번호	B+연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19+연도(2자리)+일련번호	01+연도(2자리)+일련번호	연도(2자리)+C+일련번호

3.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

- 대상협정: 한-EU FTA
- 주요 오류내용
 - 한-EU FTA에서 물품가격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
 - 원산지신고서 상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었지만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

4.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

- 대상협정: 한-EU, 영국 FTA
- 주요 오류내용
 - 영국 관세당국에서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EU국가의 관세당국에서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부산세관,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 Contact



차재영 관세전문가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민경호 관세전문가
T 02-6011-3106
E khmi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